



관 세 청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수출입신고필증 발급 대상자 확대 안내

1. 관세법 개정으로 아래와 같이 수출입신고필증 발급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화주 (개인, 사업자)도 관세청 유니패스를 통해 직접 수출입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여 2025.1.1.(수)부터 시행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2. 아울러, 한국관세사회에서도 소속 지부와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☐ 수출입신고필증 발급 대상자 확대(관세법 § 248①)

현 행	개 정
☐ 수출입신고필증 발급 ○ (원칙) 세관장이 수리 후 수출입신고인*에게 발급 * 화주 또는 관세사 ○ (예외) 국가관세종합정보 시스템을 통해 수리 시 신고인이 직접 신고필증 발급 가능	☐ 발급 대상자 확대 ○ (좌 동) ○ 신고인 → 화주 또는 신고인

끝.

관세청



수신자 1. 전국세관 각 과(직속기관 포함), 2. 한국관세사회

관세행정관

이성경

행정사무관

조현상

통관물류정책 전결 2024. 12. 23.

과 과장

박천정

협조자

시행 통관물류정책과-3642

(2024. 12. 23.)

접수

우 35208

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, 정부대전청사 통관물류정책과 (둔산동) / www.customs.go.kr

전화번호 042-481-7733

팩스번호 042-481-7819

/ kyung2mm@korea.kr

/ 대국민 공개

청렴한 당신, 행복한 국민, 신뢰받는 관세청